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204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다목1) 중 “계획홍수위선”을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중 “15년”을 각각 “18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3항”을 “법 제38조제13항”으로,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액의 100분의 1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를 “범위에서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월 1일부터”를 “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

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802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요청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 주체별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연장기간의 범위 확대(제38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 연장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원부의 필지별 작성(제70조)

종전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농작물 경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 주체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함.

다.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상향(제72조)

농지의 불법전용 등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포상금의 1명당 연간 지급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150만원으로 상향함.

라. 자료의 제공 요청(제79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